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다. 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라. 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비위”를 “혐의 당시 직급, 비위”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소극행정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4.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별표] 징계기준을 [별표 1] 징계기준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2호 내지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다-1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1. 소극행정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정직-감봉
자.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책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화·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2와 같음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행위인 경우)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견책 (강등-정직)
나. 성매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행위인 경우)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해임-강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
다.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행위인 경우)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	해임 (파면-해임)
라. 공연음란 행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행위인 경우)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감봉-견책 (강등-정직)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음주운전	비고 제8호에 따름			
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교육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다-1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3.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차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가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7. 제1호과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8. 제7호가목의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파면-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p>※ 비고</p> <p>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p> <p>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협의자의 <u>비위(非違)</u>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u>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u>, <u>뇌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u>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1. ~ 11.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징계의 기준) ① ----- ----- ----- ----- ----- <u>협의 당시 직급, 비위</u> ----- ----- <u>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1의2. 소극행정</u></p> <p><u>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u></p> <p><u>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u></p>

<신 설>

③ · ④ (생 략)

따른 부정청탁

14.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
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
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③ · ④ (현행과 같음)